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진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-22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2. .

발 의 자 : 김진천, 김영미, 권영숙,  
정혜경, 서종수, 장덕준,  
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## 1. 개정사유

현재 3대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병역명문가 예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·주차요금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

명시(안 제4조제1항)

- (1)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(2)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- (3)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- (4) 그 밖에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·  
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

나.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제2항)

(1)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, 6·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

다.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(안 제5조제2항)

3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9. 2. 25. ~ 2019. 3. 4.

나. 붙임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
2.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
3.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
4. 그 밖에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, 6.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) ① <u>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홍보)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지원) ① <u>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</u></li> <li>2. <u>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</u></li> <li>3. <u>구립 체육시설 사용료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</u></li> </ol> <p>② <u>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, 6.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5조(홍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[별표] 사용료 등의 부과·감면·환급 기준 2.수강료 나.감면기준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신설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의 사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